제886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입찰시장 개설물량 및 연도별 구매량 설정(신설) ○ 전기판매업자(한국전력)와 구역전기사업자(민간전기사업자)가 구매해야 하는 연도별(25~28년) 수소전력량* 규정 * (일반수소 발전시장) 25년 1,300GWh, 26년 2,600GWh, 27년 3,900GWh, 28년 5,200GWh * (청정수소 발전시장) 27년 3,500GWh, 28년 9,500GWh ▶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전체	1.중요
2	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운영기준 강화(강화) ○ 보험회사 규모(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규모)에 따른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최소 인원을 확대 * 회사규모에 따라 2명~5명 → 2명~8명 ○ 지원인력의 자격요건 강화, 선임계리사 ·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· 운영 및 직무교육 이행점검 의무화 ▶ 보험업법 시행령 제95조의4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림청)	1. 숲경영체험림 조성 자격 등(신설) o 숲경영체험림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・선정되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로 제한 o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5천제곱미터 이내로 제한 ▶ 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2.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(신설) o (종류) 체험, 숙박·편익, 위생, 교육, 체육, 전기·통신, 안전시설 o (기준) ▲숲경영 체험 공간 및 시설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면적의 20% 이상일 것, ▲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 등 o (규모) ▲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숲경영체험림 전체면적의 10% 이하 및 최대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, ▲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, ▲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백제곱미터 이하일 것(단,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백제곱미터 이하), ▲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▶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8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산림청)	1.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(신설) ○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▲시설물의 종류·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, ▲시설물종합배치도, ▲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, ▲관리 및 운영방법, ▲산림경영계획을 규정 ▶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	1.비중요
5	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요건 등 기준설정(강화) ○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를 지역별로 상향 * (특광역시) 5억원 → 50억원, (시) 3억원 → 30억원 (읍면) 1억원 → 5억원 ▶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	1.중요
6	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(강화) ○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도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,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 ○ 사업주는 사업개시일 ·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고,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·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▶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, 제13조, 제15조	1.중요